

방재뉴스

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

행령	현 행	개정일('90.1.18)	비 고
제26조 (내화구조)	<p>1호(법)</p> <p>가.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.</p> <p>나. 끝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에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티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,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.</p> <p>다.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,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5cm 이상인 것.</p> <p>라.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.</p> <p>8호. 상기에 계기한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.</p> <p>7호. 상기에 계기하는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지정한 것.</p> <p>①항. 3호 및 ②항 4호</p> <p>상기에 계기하는것 외에는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.</p>		“라'목 신설 개 정 ※ 방재시험소는 국립건설시험소로부터 내화구조에 대한 지정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었음.
제27조 (방화구조)		8호. 기타 건설부방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.	개 정
제29조 (방화문의 구조)		7호.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.	개 정
제35조의 2 (배연설비)	<p>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, 의료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판매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의 외부에 접합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 개구부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	“외부에 접한부분에 설치하는 창문개구부”를 거실로 한다.	개 정
제37조 (복도의 폭)		④항.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폭은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.2m 이상, 중복도식의 경우에는 1.8m 이상이어야 한다. 이경우 중복도식에 있어서는 복도의 길이가 40m를 넘는 경우에는 40m마다 측벽폭의 1/2이상이 외기에 면하여야 한다.	“4항”신설
제46조 (대규모 건축물 의 대지안의 통로)	<p>①항. 연면적이 1만 m² 이상인 건축물에는 그주위에 폭 3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	①항. “연면적이 1만 m ² 이상인 건축물”을 연면적이 5만 m ² 이상 또는 16층이상인 건축물로 한다.	개 정